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8
----------	------

제출연월일 : 2023. 4. .

제출자 : 하남시장

1. 개정이유

- 하남시 조직개편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2023.1.1.)에 따라 부서 명칭 등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괄개정을 진행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국,과) 변경 및 부서장명 변경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생략
-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혁신기획관”을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하남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남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3조(「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의 개정)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4조(「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혁신기획관)” 을 “(법무감사관)” 으로 한다.

제5조(「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혁신기획관” 을 “기획조정관” 으로 한다.

제6조(「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혁신기획관” 을 “기획조정관” 으로 한다.

제7조(「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의 개정)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혁신기획관” 을 “기획조정관” 으로, “혁신기획팀장” 을 “업무담당 팀장이” 으로 한다.

제8조(「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9조(「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 혁신기획관”을 “평생교육원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0조(「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1조(「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의 개정)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청렴감사관”을 각각 “법무감사관”으로 한다.

제12조(「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청렴감사관”을 “법무감사관”으로 한다.

제13조(「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청렴감사관”을 “법무감사관”으로 한다.

제14조(「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의 개정)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도시브랜드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의회사무과를”을 “의회사무국을”로 한다.

제16조(「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회사무과”을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제17조(「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정책과장”으로, “문화체육과 직원중”을 “문화정책과 직원중”으로 한다.

제18조(「하남시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하남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경제담당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19조(「하남시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20조(「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의 개정)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을 “안전환경국장, 보건소장,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21조(「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한다.

22조(「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법무감사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법무감사관 김 승 한
	팀장 직위·성명	법무팀장 최 설 미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 승 규 (790-5520)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u>안전자치행정국장</u>이 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당연직 위원 : <u>안전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혁신기획관</u></p> <p>2. (생략)</p> <p>⑤·⑥ (생략)</p> <p>제7조(간사) ① (생략)</p> <p>② 간사는 <u>혁신기획관</u> 예산팀장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자치행정국장</u>----- -----.</p> <p>④ -----.</p> <p>1. ----- <u>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조정관</u></p> <p>2.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기획조정관</u>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2조 하남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용역과제의 선정) ① 심의 안전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하</p>	<p>제15조(용역과제의 선정) ① ---- -----</p>

<p>“소관업무과장” 이라 한다)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을 첨부하여 <u>혁신기획관</u>에게 안전 상정을 요구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 ② (생략)</p>	<p>----- ----- ----- ----- ----- ----- <u>기획조정관</u>----- -----.</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

제3조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u>혁신 기획관</u>, 일자리경제과장, 자치 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여성 보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건강 증진과장이 된다. ④ ~ ⑦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기획조 정관</u>----- ----- -----.</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제4조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경비원이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u>혁신기획관</u>)</p> <p>3.·4.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지원의 범위)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법무감사관</u>)</p> <p>3.·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5조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u>혁신기획관</u>,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기획조정관</u>----- ----- -----.</p>

<p>다.이때 관련전문가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

제6조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조(간사의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u>혁신기획관</u> 기획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조(간사의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기획조정관</u>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7조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p>	<p>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④ ~ ⑥ (생략)</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

제9조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u>복지문화국장, 혁신기획관, 평생교육과장을</u>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p> <p>1. ~ 7. (생략)</p> <p>⑤·⑥ (생략)</p>	<p>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평생교육원장, 기획조정관</u>-----</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제10조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p>	<p>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의 사람이 된다.</p> <p>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u>정책기획관</u></p> <p>2. (생략)</p> <p>③ (생략)</p>	<p>-----.</p> <p>1. ----- ----- <u>기획조정관</u></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제11조 하남시행정서비스현장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17조 (시정 및 보상절차) ① (생략)</p> <p>②고객·민원여권과장·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장은 고객불편사항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u>청렴감사관</u>에게 송부한다.</p> <p>③<u>청렴감사관</u>은 고객불편사항 조사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불편사항 조사결과 통보서에 의거 관련 고객과 민원여권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p>	<p>제17조 (시정 및 보상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법무감사관</u>-----.</p> <p>③<u>법무감사관</u>----- ----- ----- ----- -----.</p>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

제12조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u>청렴감사관</u>에 둔다.</p> <p>② (생 략)</p>	<p>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 ----- <u>법무감사관</u>----- -.</p> <p>② (현행과 같음)</p>

제13조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포상금 지급) ① (생 략)</p> <p>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 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 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금으로 지 급할 경우에는 <u>청렴감사관</u>이 지 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 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수령 한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p>	<p>제13조(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법무</u> <u>감사관</u>----- ----- ----- -----.</p>

제14조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하남시 <u>도시브랜드 담당관</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④ (생략)</p>	<p>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공보담당관</u>-----</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15조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p> <p>가. 시(소속·하부행정기관 및 <u>의회사무과</u>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 청원경찰</p> <p>나.·다. (생략)</p>	<p>제2조(정의) -----</p> <p>-----.</p> <p>1. -----</p> <p>-----</p> <p>-----</p> <p>-----.</p> <p>가. -----</p> <p><u>의회사무국</u> -----</p> <p>-----</p> <p>---</p> <p>나.·다. (현행과 같음)</p>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

제16조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u>의회사무과</u> 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u>의회사무국</u> ----- ----- -----.

제17조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간사는 <u>문화체육과장</u> 이 되며 서기는 <u>문화체육과 직원</u>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문화정책과장</u> ----- -- <u>문화정책과 직원</u> 중----- -----.

<p>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위임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시의회 소관 물품 : <u>의회사무과장</u></p> <p>② (생략)</p>	<p>-----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의회사무국장</u></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20조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u>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u>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 3.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안전환경국장, 보건소장, 안전정책과장</u>----- ----- -----.</p> <p>1. ~ 3. (현행과 같음)</p>

제21조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협의회의 설치)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은 하남시 <u>안전총괄과</u>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둔다.</p>	<p>제2조(협의회의 설치) ----- ----- ----- <u>안전정책과</u>----- -----.</p>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하남시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교육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안전정책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식품위생농업과 식품위생농업과
9. 산업통상자원부	1.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나. 원유 수급 사고 3. 다.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라. 전력 사고 5.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11. 환경부	6.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7.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8.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9.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0. 마. 황사	환경정책과 상수도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2. 고용노동부	11.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일자리경제과
13. 국토교통부	12.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13. 나. 고속철도 사고 14.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15. 라. 도로터널 사고 16.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17.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18. 사. 지하철 사고 19. 아. 항공기 사고 20.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21.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과 - 건설과 건설과 상수도과 교통정책과 도시전략과 - -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22.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3. 나. 조수(潮水) 24.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25. 라. 해양 선박 사고	-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7. 소방청	26. 가. 화재·위험물 사고 27.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18. 문화재청	28.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정책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시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하남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6+a명		
	반 장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1) 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식품위생농업 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일자리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정책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하남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복지정책과

	(3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라) 행정지원팀 (1명)	· 정보통신과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식품위생농업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일자리경제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공보담당관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안전정책과
	마) 에너지공급피해시설기능복구반	· 교통정책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보건정책과
	사) 재난관리자원지원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아) 교통대책반	· 하남경찰서
	자)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 하남소방서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카) 사회질서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하남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육군제55사단,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
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7+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 난 상황 관리 팀(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복지정책과	
		다) 상황관리총 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7명)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라) 행정지원팀		· 정보통신과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식품위생농업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일자리경제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공보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안전정책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교통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보건정책과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아) 교통대책반	· 하남경찰서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하남소방서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하남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육군제55사단,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
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하남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6+a명		
	반 장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1) 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식품위생농업 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마) 에너지 공		· 일자리경제과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정책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정책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하남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3+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 상황관리 가) 재난정보	· 재난상황관리반 5명

총괄반 (12명)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복지정책과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3명)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마) 행정지원팀 (1명)	· 정보통신과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식품위생농업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일자리경제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공보담당관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안전정책과
	마) 에너지공급피해시설기능복구반	· 교통정책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보건정책과
	사) 재난관리지원지원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아) 교통대책반	· 하남경찰서
	자)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 하남소방서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하남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육군제55사단,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7+a명)	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복지정책과
	라) 상황관리총 괄 및 상황 분석 평가 (7명)	·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마) 행정지원팀 (1명)	· 정보통신과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식품위생농업 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일자리경제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공보담당관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안전정책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교통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보건정책과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아) 교통대책반	· 하남경찰서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하남소방서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하남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육군제55사단, 한	

	<p>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p>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
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
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시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9+\alpha+\beta+\gamma$ 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재 난 상 황 총 괄 반 (9명)	가) 상황관리총 괄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과 악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정책과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식품위생농업 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경제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보담당관
		바) 재난수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정책과

	홍보반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교통정책과
	아) 교통대책반	· 보건정책과
	자) 의료·방역서 비스 지원반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하남경찰서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하남소방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하남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육군제55사단,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국·소 소속 직원 등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